

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5. 9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2026년도 구미시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미시의회 의사결정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기관 : 한국지방세연구원

나. 출연 예정금액 : 39,231천원(시비 100%)

다. 출연필요성

「지방세기본법」에 근거하여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·출연하고자 함

라. 법적근거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

※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‘25년 말 개정예정으로 2026년 출연비율 인하
(1만분의 1.2 → 1만분의 1.0)

3. 참고사항

가. 첨부서류

- 1) 출연 동의요구서(붙임)
- 2) 출연기관 현황(붙임)
- 3) 출연 사업계획서(붙임)

나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

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

다. 예산조치 : 2026년도 예산편성(39,231천원)

라. 합 의 : 예산재정과

1) 출연 동의요구서

주관부서	세정과					
기관명	한국지방세연구원					
출연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반현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재지 :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- 주요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·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					
출연사업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출연 예정금액 : 39,231천원(시비 39,231천원) 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:천원) 					
	구분	2025년도 출연금	2026년도 예산안			전년대비 증감액
	출연금 (시비 100%)	57,152	연구월 요구액 39,231	부서 산정액 39,231	증 감 -	감17,921
출연필요성	○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·출연하고자 함					
근거·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세기본법 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 ○ 지방세기본법 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영) ○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 					
지도감독부서의견(총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, 정기 간행물 발간,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, ○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, 재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, ○ 특히,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(총12명)에서 심의·의결하고 있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지방세 업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 					
첨부자료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출연기관 현황 2. 출연사업계획서 					

2) 출연 기관현황

한국지방세연구원

설립근거	법 률 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1조			전화번호 : 02-2071-2748			
				홈페이지 : www.kilf.re.kr			
주요연혁	- 2011.2 설립등기, 2011.4 개원,		기관형태 (출자, 출연)		출연		
인원현황 (2025년 8월 현원기준)	○ 정원 78명 / 현원 64명 * 육아휴직 7명 포함						
	구 분	계	원 장	연구직	관리직	전문직	사무직 등
	정 원	78명	1명	50명	2명	4명	21명
	현 원	64명	1명	34명	2명	4명	23명
총인원	98명	정원의외 인원 34명 (과건공무원12, 위촉연구원13, 위촉전문원3, 행정원4, 청사관리원2)					
※ 연구직(34명) : 연구위원직 18명, 연구원직 8명, 조사분석직 8명							
임 원 (2025년 8월 현원기준)	직 책 (직책명)	성 명	주요경력 (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)		비 고		
	이 사 장	정 종 섭	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		2024.2.2. ~ 2027.2.1.		
	부이사장	김 하 수	경상북도 청도군수		2025.3.13. ~ 2026.3.12.		
	이 사	강 성 조	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		당 연 직		
	이 사	김 성 기	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		당 연 직		
	이 사	오 준 혁	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		2024.8.30. ~ 2025.8.29.		
	이 사	이 태 산	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		2024.8.30. ~ 2025.8.29.		
	이 사	조 병 래	경기도 자치행정국장		2024.8.30. ~ 2025.8.29.		
	이 사	신 동 헌	충청남도 자치안전실장		2024.8.30. ~ 2025.8.29.		
	이 사	김 성 수	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		2025.3.13. ~ 2026.3.12.		
	이 사	강 범 석	인천광역시 서구청장		2025.3.13. ~ 2026.3.12.		
	이 사	김 성	전라남도 장흥군수		2025.3.13. ~ 2026.3.12.		
	이 사	박 관 규	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		2023.8.30. ~ 2025.8.29.		
	감 사	김 정 선	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		당 연 직		
	감 사	김 경 태	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		2024.2.28. ~ 2026.2.27.		
	주요기능	-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					
설립자본금 (단위:백만원)	1 (직전연도말 기준)			출자·출연액 (단위:백만원)	139,826 (‘11~’25 까지 지자체가 출자·출연한 금액)		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백만원)	연도	2022	2023	2024	재무현황 (백만원) ‘24.12.31기준	자산	27,444
	예산액	18,069	17,379	19,269		부채	1,875
	지자체 지원액	13,797	12,383	13,078		자본	25,568
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 ‘24.12.31기준	총수익			총비용		당기순이익	
	18,063			16,309		1,820	

3) 출연 사업계획서

사업명	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	구분	출자	해당없음
주관부서	세정과		출연	39,231천원(시비)

① 목적 및 필요성

-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
-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

② 출연개요

- 연구원 운영 예산(‘24년: 19,269백만원) 중 13,078백만원을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
-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공동 출연 운영기관

③ 산출기초

- 출연액 : 39,231천원
- 전전년도 보통세의 1.0/10,000를 출연
 - 출연근거 : 「지방세기본법」 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

【 연도별 출연 내역 】

(단위 : 천원)

구분	합계	‘21년	‘22년	‘23년	‘24년	‘25년
출연금	270,529	58,177	45,986	49,767	59,447	57,152

④ 기대효과

-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
- 지방재정·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

⑤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, 지방재정·세제 발전을 위한 사업 위축
-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관련 법령 위반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지방세기본법」

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(이하 "지방세연구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□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

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

1. 1만분의 1.2

2. 1만분의 0.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

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

1.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

2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·평가

3. 지방세의 연구·홍보

4.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

5.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

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 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

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매년 전전년도('24)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(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제1항)
-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1만분의1.0
(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94조)

※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‘25년 말 개정 예정으로 2026년 출연비율 인하 (1만분의 1.2 → 1만분의 1.0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4. 작성자

세정과 도세팀 조수연 (☎ 480-6858)

소 관 부 서		세 정 과
입 안 자	과 장	문 영 후
	팀 장	조 진 희
	담 당 자	조 수 연 (480-6858)